#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·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7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김용태·강경숙·이종배

박준태 • 박충권 • 우재준

서천호 • 박정하 • 조은희

김준혁 • 배준영 • 김예지

조정훈 · 김민전 · 천하람

정성국 • 문정복 • 진선미

백승아 · 고민정 · 임이자

의원(21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네스코는 교육, 과학, 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 없는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인류의 지적·도덕적 연대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로, 대한민국 역시 1950년 유네스코 가입 후 「유네스코헌장」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설립·운영 하고 있음.

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
또한,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아시아 · 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

설립 협정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을 아태교육원의 목적과 기능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 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,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강화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함(안 제7조제3항·제4항, 제10조, 제16조제3호, 제25조제4항, 제26조, 제28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관련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 중 "5인"을 "6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5. 환경부차관

제10조제3항 본문 중 "제4호"를 "제5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4 인"을 "3인"으로 한다.

제16조제3호 중 "제5호"를 "제6호"로 한다.

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"국제이해교육"을 각각 "국제이해교육" 으로 한다.

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아태교육원은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

하여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) 지방자치단체는 아태교육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아태교육원에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	제7조(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
치) ①·② (생 략)	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
	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
	비를 지원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와
	공동으로 유네스코 관련 사업
	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
	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
	<u>있다.</u>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	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
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5	<u>6</u>
<u>인</u>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	<u>인</u>
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	
한다.	<u>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환경부차관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③ 위원장, 제2항제1호부터 <u>제4</u>	③ <u>제5</u>
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	<u>ই</u>
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
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(이하 "집행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 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 천하는 공무원 중 4인
- 5. (생략)
- ④ ⑤ (생 략)

제16조(총회의 기능) (생 략)

- 1. 2. (생략)
- 3. 제10조제2항<u>제5호</u>에 따른 부 위원장 및 제1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

4. ~ 7. (생 략)

- 제25조(유네스코 아시아·태평양 저국제이해교육의 설립) ① ~ (생 략)
  -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사업을 수행한다.

	_
	_
	_
	_
	-
	-
	_
1. ~ 3. (현행과 같음)	
4	_
	-
<u>3인</u>	
5. (현행과 같음)	
④·⑤ (현행과 같음)	
제16조(총회의 기능) (현행과 겉	<u> </u>
<u>수</u> )	
1. • 2. (현행과 같음)	
3 <u>제6호</u>	_
	-
	-
4. ~ 7. (현행과 같음)	
제25조(유네스코 아시아·태평양	ŀ
국제이해교육의 설립) ① ~	_
③ (현행과 같음)	
4	_

- 1. <u>국제이해교육</u>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·지역적 역량 강화사업
- 2. <u>국제이해교육</u>에서의 아시아· 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
- 3. <u>국제이해교육</u> 교육과정의 연 구·개발 사업
- 4. <u>국제이해교육</u>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
- 5. <u>국제이해교육</u>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·보급 사업
- 6. 그 밖에 아시아·태평양 지역 내 <u>국제이해교육</u>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 ⑤ • ⑥ (생 략)

제26조(경비 지원) 국가는 예산의 저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1.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
<u>육</u>
 2. <u>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</u> <u>육</u>
3.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
<u>육</u>
4.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
<u>भ</u>
5.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
<u>육</u>
6
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
민교육
⑤・⑥ (현행과 같음)
세26조(경비 지원) <u>①</u> (현행 제목
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아태교육원은 제25조제4항

<신 설>

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8조(공유재산의 사용・수익)
지방자치단체는 아태교육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아태교육원에 무상으로 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다.